

- 2) 대 표 자 : 김상곤
- 3) 영업소재지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114번길 70, 1동 4층
- 4)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: 대기환경전문공사업
- 5) 등 록 번 호 : 대기 제98호
- 6) 등록연월일 : 2016. 11. 29.
- 7) 취 소 사 유 : 자진반납
- 8) 취 소 일 자 : 2019. 04. 05.

●경상남도공고제2019-639호

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변경 인가

경상남도 고시 제2000-124호('00.6.30.)로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12-224호('12.4.16.)로 사업시행 인가 및 경상남도 고시 제2018-1131호('18.8.24.)로 사업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인가된 밀양 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종전의 「토지구획정리사업법」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밀양시(도시과) 및 해당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4월 5일

경상남도지사

1. 사 업 명 :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
2. 위 치 :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1235번지 일원
3. 사업면적 : 283,237㎡
5. 사업기간
 - 당 초 : 2012. 04. 17 ~ 2019. 4. 16
 - 변 경 : 2012. 04. 17 ~ 2021. 4. 16 (2년 연장)
 - 변경사유 : 사업정상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사업기한 연기
6. 시 행 자 : 밀양내이3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문 재 영
7. 관계도서 : 게재생략(밀양시 도시과 및 조합사무실 비치)

기 타

○공 고

1.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환부자가 소재 불명 등으로 환부를 할 수 없어 공고하니,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.
2.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.

2019년 4월 11일

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